의안번호	2209237
의 뢰 인	김승원의원
회 답 일	2025.4.3.
추계번호	25D1802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위탁병원의 감면진료 대상 연령을 하향(75세→70세)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00만원, 2030년 9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,700만원(연평균 7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감면대상 연령 하향 (안 제51조제6항)	6	7	7	8	9	37	7

주: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51조(진료)	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로서 위탁병원 진료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현행 “75세 이상”에서 “70세 이상”으로 하향 조정함(제6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제51조제6항(위탁병원 감면대상 확대)	O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개정안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대상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, 진료비 지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[표 2]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감면율 현황

감면대상	보훈병원	위탁병원
보훈보상대상자	6급 이상 전액지원	6급 이상 전액지원(비급여는 MRI, 초음파, 건위소화제만 해당)
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	60%	60%(보상금을 수령하는 75세 이상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또는 사망한 재해보상군경의 배우자)

자료: 국가보훈부

❑ 본 추계에서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 연령 확대의 추가재정소요 산출 시, 신규인원, 수진횟수, 감면진료비 단가는 다음의 변수를 적용하여 추정함

○ 신규인원: 보상금을 받는 70세 이상 75세 미만 재해사망·재해부상군경 등의 배우자 인원((2024년 기준 68세 이상 73세 미만))에 최근 5년 연평균증가율 적용

○ 수진횟수: 최근 5년 위탁병원 평균 수진횟수를 적용

○ 감면단가: 감면진료비 단가(2023년 기준)에 최근 5년 연평균증가율을 적용

❑ 개정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본 추계에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 연령 하향(75세→70세, 안 제51조제6항)

❑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 연령의 하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감면진료의 대상으로 추가되는 인원에 감면진료비 단가와 수진횟수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

❑ 2026년 기준 보상금을 받는 70세 이상 75세 미만 재해사망·재해부상 군경의 배우자 인원(25명)에 연평균 증가율(6.55%)[1]을 적용하여, 추계기간 동안 위탁병원 감면진료의 신규 대상인원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

[표 3] 위탁병원 감면진료 신규 인원: 2024~2030년

(단위: 명)

	2024	2026	2027	2028	2029	2030
신규인원(누적)	25 (68~73세)	25	27	28	30	32

주: 1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위탁병원 감면진료 신규인원만 표시한 것임
2. 2026년 인원은 2024년 현재 68세 이상 73세 미만의 인원(25명)과 동일하다고 가정함
자료: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❑ 2023년 결산기준 위탁병원 감면진료비 단가 22,756원에 연평균 증가율(3.81%)[2]을 적용하여, 추계기간 동안 감면진료비 단가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

[표 4] 위탁병원 감면진료비 단가: 2023~2030년

(단위: 원)

	2023	2026	2027	2028	2029	2030
감면진료 단가	22,756	25,461	26,432	27,441	28,488	29,574

자료: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❑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위탁병원 감면진료의 대상 연령을 하향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,700만원으로 추계됨

1)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 현황: 2019~2023년

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증가율
인원	45,420	44,674	50,190	52,836	58,544	6.55%

주: 국가유공자의 선순위유족,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등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를 모두 합산한 수치임

2) 위탁병원 감면진료비 단가: 2019~2023년

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 증가율
감면진료비 단가	19,591	21,721	20,261	24,360	22,756	3.81%

[표 5]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 연령 하향의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	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위탁병원	감면진료 신규인원(a, 명)	25	27	28	30	32	-
	수진횟수(b, 회)	9.5	9.5	9.5	9.5	9.5	-
	감면진료 단가(c, 원)	25,461	26,432	27,441	28,488	29,574	-
	추가재정소요 (d=a×b×c, 백만원)	6	7	7	8	9	37

주: 수진횟수는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의 연평균 수진횟수[3]를 적용함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추계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위탁병원의 감면진료 대상 연령을 하향(75세→70세)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00만원, 2030년 9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,700만원(연평균 7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감면대상 연령 하향 (안 제51조제6항)	6	7	7	8	9	37	7

주: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Ⅳ. 부대의견

❑ 본 추계에서 진료대상자 및 진료횟수는 과거 추이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3) 위탁병원 수진횟수 현황: 2019~2023년

	2019	2020	2021	2022	2023	평균
수진횟수	12.1	10.1	8.4	8.3	8.7	9.5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장삼열	김안나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삼열	02-6788-4831	jsy@na.go.kr